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- 사업명 : 체육시설 운영서버 이중화 솔루션 구입
- 협약대상품목 : 이중화 솔루션
- 발주자(갑) : 대구시설공단
- 제조사(을) : (주) 맨텍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“갑”은 발주자로서 “을”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“을”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“을”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는 금액 (금 일천삼백오십만원정/₩13,500,000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“을”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“을”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19년 3월 28일

“갑” 대구시설공단 (인)

“을” (주) 맨텍

